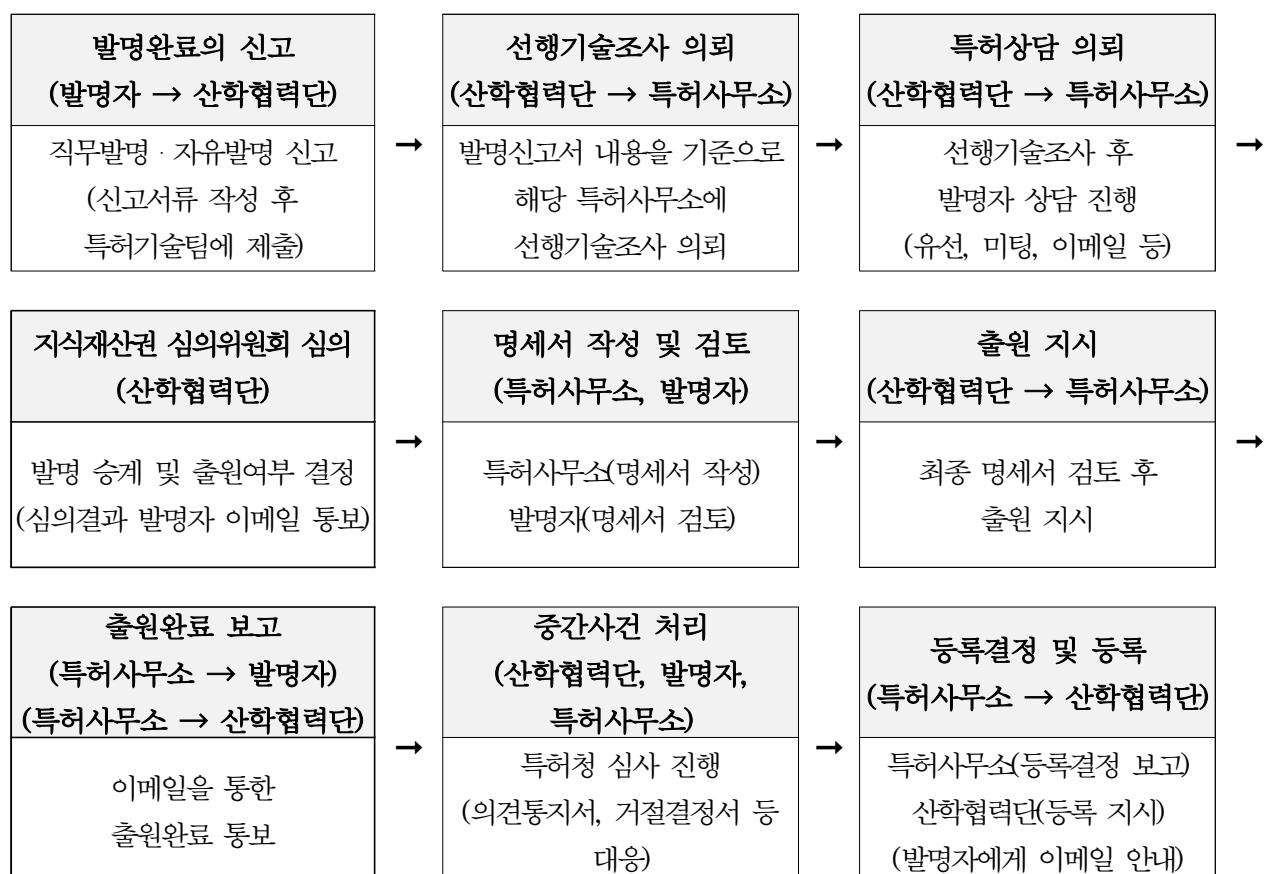


1. 업무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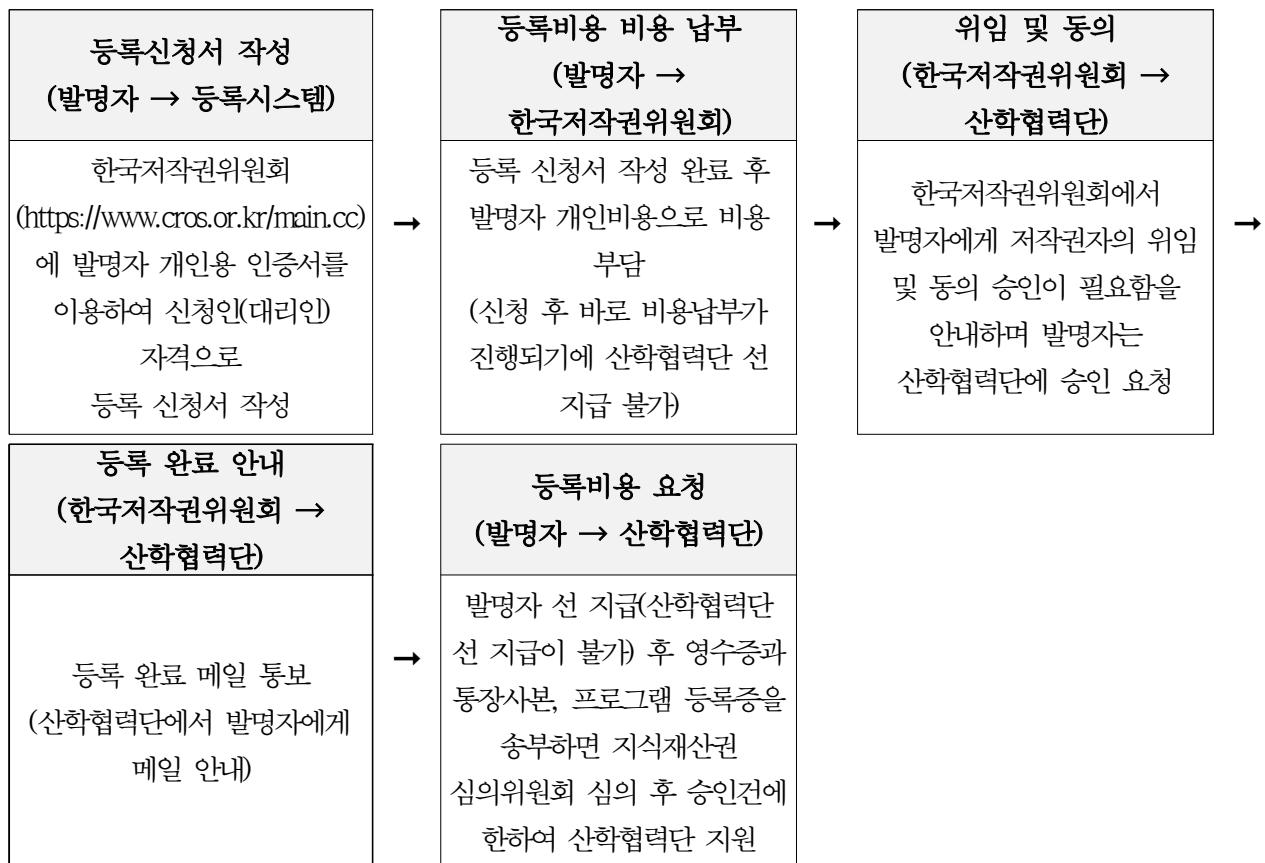
- 목적 :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,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- 시기 : 연중
- 관련법령 또는 근거
 - 발명진흥법 /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 -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(이하 ‘지식재산권 규정’이라 함)
 -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시행지침(이하 ‘시행지침’이라 함)
- 관련부서 : 전 부서

2. 업무흐름도

■ 특허 관리 업무



■ 프로그램, 기타 저작권 관리 업무



3. 주요내용

■ 업무 처리 세부 절차

- 직무발명 신고 의무(지식재산권 규정 제10조)
 - 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함
 - 제출서류 : 직무발명신고서, 발명내용설명서, 양도증, 선행기술조사서
- 권리승계의 결정 및 통지(지식재산권 규정 제12조)
 -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자체 없이 그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

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■ 직무발명 권리승계(지식재산권 규정 제12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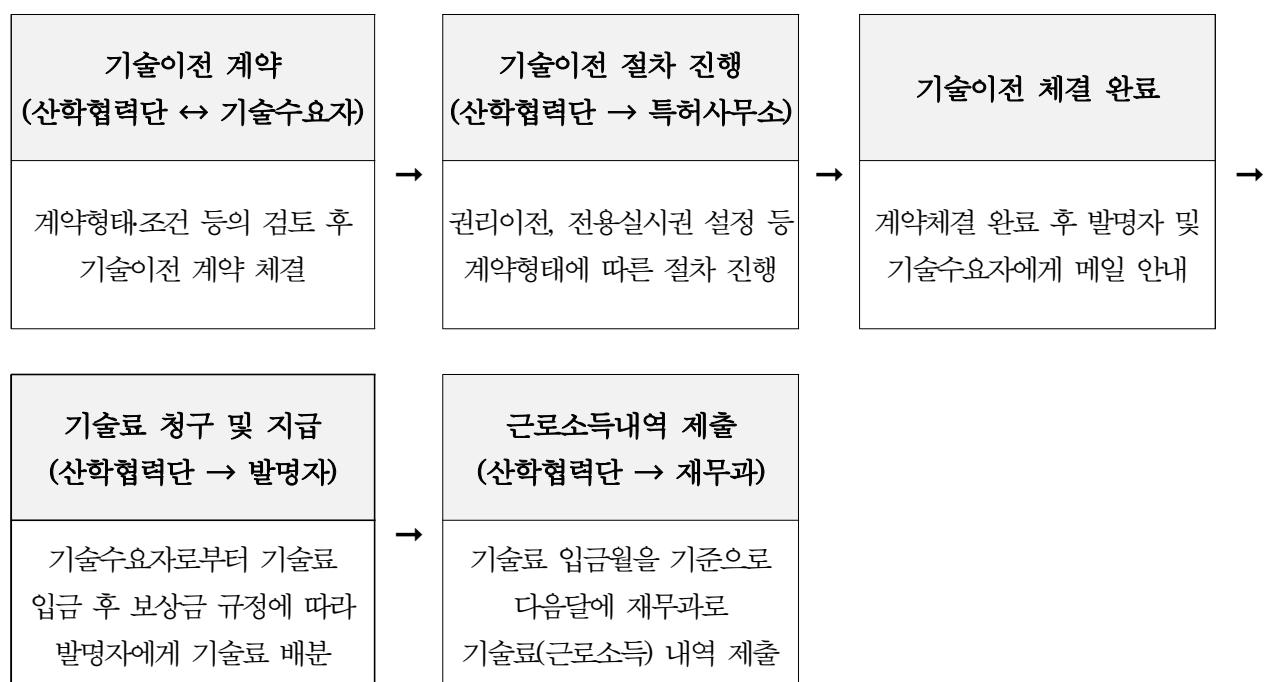
- 한국교통대학교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음

1. 업무개요

- 목적 :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(Know-How 포함)을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기술료 수입 증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
- 시기 : 연중
- 관련법령 또는 근거
 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
 -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(이하 ‘지식재산권 규정’이라 함)
 -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시행지침(이하 ‘시행지침’이라 함)
- 관련부서 : 전 부서

2. 업무흐름도

■ 기술이전 업무



3. 주요내용

- 기술이전 실시료 분배(지식재산권 규정 제23조)
 - 기술이전 계약 완료 후 입금된 기술료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 발명자 배분
 - 실시료 배분기준

2천만원 이하							2천만원 초과분	
발명자 주도		산학협력단 주도		중개기관 주도			발명자	산단
발명자	산단	발명자	산단	발명자	산단	중개기관		
90%	10%	70%	30%	70%	20%	10%	65%	35%

- 특허권이 없는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은 발명자 90%, 산학협력단 10%로 배분
- 기술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
-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(이하 “기술지주회사” 라 함)의 중개에 따라 기술이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명자 보상금 50%를 지급하고, 나머지 50% 중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의 80%는 기술지주회사의 중개보수금으로 지급
- 기술료 기여자 보상금 지급(지식재산권 규정 제23조)
※ 발명자 이 외의 자가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과정에 기여한 경우 수익금의 5% ~ 10%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가 수령할 보상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

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■ 기술이전 기술료 근로소득세 적용

- 기술료 : 기타소득세 → 근로소득세 적용
 - 2017. 1. 1.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기타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로 변경

■ 교원 업적평가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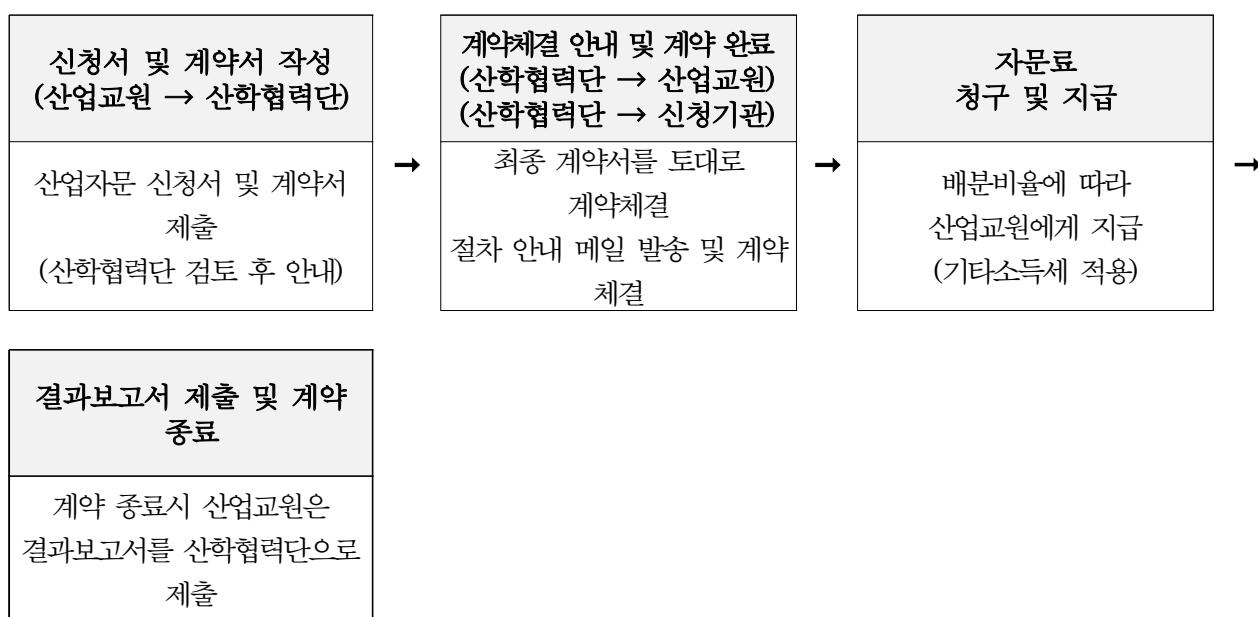
- 특허권이전료 및 로얄티(기술이전 포함, 입금일 기준)등의 실적에 대하여 백만원당 40점을 인정하고 총액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백만원당 20점을 가산(출원인이 “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” 인 경우만 인정)

1. 업무개요

- 목적 :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 성과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기술료 수입 증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
- 시기 : 연중
- 관련법령 또는 근거
 -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(이하 ‘지식재산권 규정’이라 함)
 -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(이하 ‘시행지침’이라 함)
- 관련부서 : 전 부서

2. 업무흐름도

■ 산업자문 업무



* 산업교원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함

3. 주요내용

■ 산업자문 정의 및 분류

- 산업자문 정의
 - 한국교통대학교 전임교원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, 직능단체 등의 자문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(기술, 경영, 디자인 등) 지원 및 컨설팅 역할 수행
- 산업자문의 분류 : 기술자문, 경영지원, 컨설팅, 디자인 등
- 업무 처리 세부 절차
 - 자문을 희망하는 산업체 또는 산업교원은 자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
 - 자문신청서를 검토(자문목적, 자문범위 및 내용, 자문방법, 자문료)하여 산업자문계약을 체결
 - 자문 실시한 산업교원은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자문 결과보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
- 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(시행지침 제7조)

산업교원	산학협력단	비교
90%	10%	산업교원은 전임교원에 한함

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■ 산업자문료 기타소득세 적용

- 기타소득세 : 소득금액의 20% 납부
 - * 소득금액(40%) = 총 수입금액(100%) - 필요경비(60%)
 - * 세법상 기타소득세율은 20%이나 총 수입금액 대비(지방소득세 포함) 8.8%에 해당

■ 교원 업적평가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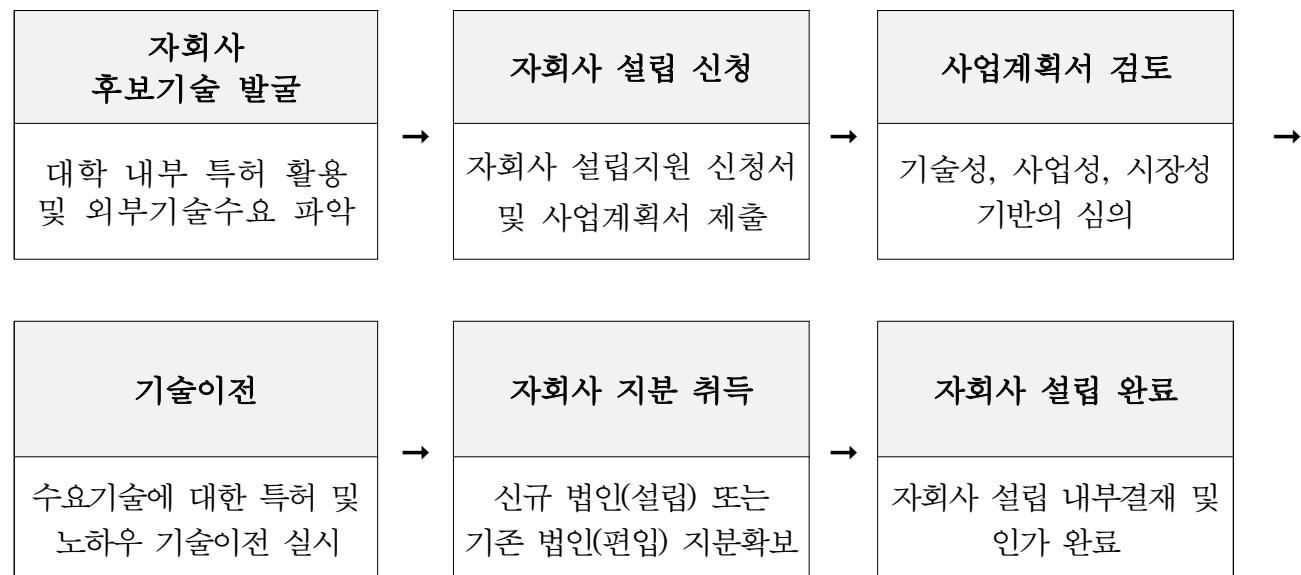
- 산업자문은 산학협력단이 계약금액의 10분의 1을 정수한 실적에 대하여 백만원당 20점을 인정하며, 입금일 기준으로 적용(산학협력단 인정분에 한함)

1. 업무개요

- 목적 :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기술창업 문화를 확산하고, 나아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
- 시기 : 연중
- 관련법령 또는 근거 :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
- 관련부서 : 기술지주회사 및 특허기술팀

2. 업무흐름도

■ 자회사 설립



3. 주요내용

■ 기술사업화 및 전략적 재원확보업무 강화

- 기술지주회사의 기업중심 기술이전과 산학협력단 특허기술팀의 교내 연구자 중심 기술이전 역할 분담을 통한 기술이전 극대화

-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출연사업 전략적 추진 및 사업화
-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기술성, 권리성, 시장성을 분석하여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과 사업 가능성 있는 양질의 연구 성과물 선별

■ 양질의 연구 성과물 분석을 통한 사업화대상 기술선정

- 집중/공백/유망 분야 분석을 통해 사업화대상 선정
- 기술이전/ 기술창업/ 유망한 기존 법인의 자회사 편입 추진

■ 상용화 검증 및 테스트

- 산학협력단(특허기술팀)과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1차 검증
-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발굴된 기술을 산학 협력단(특허기술팀)과 공동으로 2차 상용화 검증 실시

■ 자회사 성장 지원

- 대학 내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회사의 애로기술 해결지원
- 자회사의 현금출자 지원, 정부사업 참여 지원 및 자회사 운영지원

■ 투자유치 및 기술사업화 BM 컨설팅

- 자회사의 장기적인 R&D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
- 국가 R&D의 연구지원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금융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여 자회사 자금조달 지원 및 기술기반 투자유치 활성화

■ 수익구조 및 발명자 보상

- 자회사 수익 배당, 지분매각, 자회사 M&A 및 주식공모 등
- 출자기술에 의한 수익 발생 시 총수익의 일정비율을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

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■ 자회사 설립을 위한 사전 사업화 타당성 검토

- 자회사 설립 일정 및 제품(상용화)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
- 자회사 설립을 위한 기술출자를 실시하는 경우,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평가금액 산출 및 이를 법원으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
 - 기술가치평가 금액이 큰 경우, 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이 커져야 하는 문제점 발생 및 세금이 높아지는 점에 유의
 - 기술가치평가 금액이 적은 경우, 설립 자회사의 자본금 대비 일정비율(10~20%)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현금 투자가 필요
- 자회사가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한 기술지주회사는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협의를 통한 BM컨설팅 자문계약 체결 추진